

정 관

학교법인 화봉학원

학교법인 화봉학원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4)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화봉학원 (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산중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74에 둔다. (개정 2017. 10. 16.)

제5조 (삭제 2005. 12. 14)

제5조의2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변경된 사항은 14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변경된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어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보고 한다. (개정 2007. 4. 19, 2008. 1. 1, 2013. 2. 6)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 ③보통 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 ①이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장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07. 4. 19)
- ④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7. 4. 19)

제9조의2(회계의 보고 및 공시)

-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9)
- ②제1항에 의한 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부속명세서 포함)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서(부속명세서, 감사보고서 포함)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안에 각각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9)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예산, 결산의 공개) (삭제 2007. 4. 19)

제3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2007. 4. 19)

제13조 (삭제 2007. 4. 19)

제14조 (삭제 2007. 4. 19)

제15조 (삭제 2007. 4. 19)

제16조 (삭제 2007. 4. 19)

제17조 (삭제 2007. 4. 19)

제 3 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07. 11. 13)
2. 감사 2인,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9)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의1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본조신설 2018. 4. 20.)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4. 19)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 관할청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신설 2007. 4. 19)

제20조의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신설 2007. 4. 19)

제20조의4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 4. 19, 개정 2008. 1. 1)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요청 할 때 제20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9, 개정2008. 1. 1)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신설 2007. 4. 19, 개정2008. 1. 1)

④(삭제 2008. 1. 1)

제20조의5(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화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 2인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하는자 : 3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2008. 1. 1)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에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사정수의 1/3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자를 선임한다. (신설 2007. 4. 19. , 개정2008. 1. 1)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 4. 19. , 개정2008. 1. 1)

⑦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 4. 19)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9, 2008. 1. 1)

제23조(삭제 2005. 12. 14)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삭제 2005. 12. 14)

제26조 (삭제 2005. 12. 14)

제2절 이사회

제27조 (삭제 2005. 12. 14)

제28조 (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개정 2007. 4. 19)
- ②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2. 14, 2007. 4. 19)
- ③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에서 회의에 참석할 경우 참석인원으로 판단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 2. 6)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붙어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 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가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점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05. 12. 14)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 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 04. 19)

제31조의2 (사학윤리강령 및 사립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

①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서 모든 교직원은 사학윤리강령과 전라북도사립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6)

② (삭제 2013. 2. 6)

제31조의3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장은 이사회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4. 19)

②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9., 후단신설 2008. 1. 1)

③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9., 개정2008. 1. 1)

④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1)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임대사업
2. 판매사업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 및 판매 사업을 경영한다.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이 법인의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70-3번지에 둔다.

제35조 (관리인)

①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라북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12. 14)

제37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 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전라북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면

제39조 (임면)

- ①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9)
-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③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의 교원 정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학교장에 한 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준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⑤교원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는 특별 승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⑦제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마감일 1월 전까지 채용인원, 채용분야,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학교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14)
- ⑧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1. 1)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학교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1호, 2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0. 16)
- ⑨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 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임용을 제한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 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교원은 당연 면직한다. (신설 2013. 2. 6)

제39조의2(기간제교원)

- ①사립학교법(이하“법이라 한다) 법54조의4제1항에 의거 임용하는 교원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삭제 2005. 12. 14.)
- ③학교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14)

제39조의3(전형결과 공개)

-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4. 19)
-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

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7. 4. 19)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 내지 12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 10. 16)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17. 10. 16)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7. 10. 16)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고용될 때 (개정 2017. 10. 16)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8. 1. 1, 2013. 2. 6, 2017. 10. 16)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신설 2017. 10. 16)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신설 2008. 1. 1)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 2008. 1. 1)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신설 2008. 1. 1)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7. 10. 16)

제4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2. 14, 2017. 10. 16)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여교원은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제7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입양자녀 1인당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직 중 총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10. 16)
9. 제4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3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6)
10. 제40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전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10. 16)
11. 제40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중 총1회,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10. 16)

제42조(휴직 교원의 신분)

-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4)
-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05. 12. 14, 2017. 10. 16)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05. 12. 14, 2017. 10. 16)
- ②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05. 12. 14, 2017. 10. 16)
- ③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14, 2017. 10. 16)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

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5.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 내에 기간 대기를 명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8.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2. 14)

제46조 (삭제 2005. 12. 14)

제46조의2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46조의3 (삭제 2005. 12. 14)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2007. 4. 19, 2007. 11. 13)

제48조 (인사위원회 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4. 19)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4. 19)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4. 19)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4. 19)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7. 4. 19)

제49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추천한 자 및 외부인사, 교직원 등으로 조직한다. (개정 2007. 11. 13)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16, 신설 2017, 10. 16)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자가 아닐 것

④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6)

②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5조 4항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 (징계 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 (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2 (위원의 기피등)

-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3 (징계의결 요구 사유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0. 16)

제60조 (징계 의결)

- ① 징계 의결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

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징계 의결서의 정상 참작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징계요구에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2017. 10. 16)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 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3조 (운영 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4조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인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지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될 수 있다.

③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5조 (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사무직원선발, 전직, 전보, 강 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4.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의 정년규정을 준용한다.

⑤일반직원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7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9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0조 (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로 보한다.

②법인 사무과에서는 기획계와 서무계를 두며, 각 계장은 부주사로 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중학교

제71조 (교장등)

-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신설 2007. 4. 19)

제72조 (하부조직) 화산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4. 19)

제3절 정원

제73조 (정원) 법인 및 화산중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74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 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5조 (위원정수)

- ①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개정 2006. 3. 17)
- ②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학부모 위원 : 50/100
 2. 교원위원 : 40/100
 3. 지역위원 : 10/100

제76조 (위원의 선출등)

-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보직교사를 포함한 2배수로 추천한 교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③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또는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0.)
-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한다.

⑤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회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7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of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되 최초의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 (위원의자격)

①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중인 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건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자 또는 수행 경력이 있는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9조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81조 (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5. 고교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개정 2008. 1. 1)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서클 등으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0.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3.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07. 4. 19, 개정 2008. 1. 1)
 14.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 4. 19)
 15.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다만, 법인이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82조(시행 의무 등)

-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81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②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 경비 등

제83조(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이사장의 감독 등)

학교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을 통하여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5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6조 다음에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화산중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88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 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 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90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3조 (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5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6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97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9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칙

제99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전 북일보 신문에 공고한다.

제10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1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 사 장	남 도 현	1920. 2. 10	4년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578번지
이 사	심 의 두	1935. 2. 28	4년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291번지
이 사	장 인 태	1924. 6. 2	4년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93번지
이 사	구 연 건	1919. 9. 16	4년	전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 656번지
이 사	이 태 승	1933. 12. 1	2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373번지
이 사	윤 석 영	1927. 12. 7	2년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48번지
이 사	오 현 충	1935. 8. 19	2년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518번지
감 사	최 순 찬	1927. 7. 8	1년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380번지
감 사	김 영 진	1927. 9. 8	2년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우월리 398번지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6 명
일반 직 계	6 명
6급 (주사)	1 명
7급 (부주사)	2 명
8급 (서기)	1 명
9급 (서기보)	2 명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6 명
일반 직 계	6 명
교육행정 6급 (주사)	1 명
교육행정 7급 (부주사)	1 명
교육행정 8급 (서기)	1 명
사무운영 9급 (서기보)	1 명
시설관리 9급 (서기보)	2 명

부 칙(1977. 7. 1)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자중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
3.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 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까지 채용하지 못한다.
4.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1. 8. 1)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 위원회 및 재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대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라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 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1983. 10. 20)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 위원회 및 재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1986. 10. 8)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 1. 1)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1990. 6. 4)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8. 9)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9. 7)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9. 20)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 4)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정관 시행일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3.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장에 대하여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